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주거용도 구역 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불편 민원

□ 신청 원인

- 해당 민원은 00동 □□-□□의 주거용 용지로 설계된 곳에 주변 상가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거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용지의 본래 용도에도 맞지 않으므로,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단속과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주차관리과
 - 위 민원을 확인하여 본 바 주요 민원 원인은 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공회전 소음으로 보이며,
 - 이를 단속하고 민원 처리하는 부서는 기후환경과 생활소음팀의 업무 분장에 있어 이송을 요청하는 바임.
- 기후환경과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유지의 비영리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공회전, 경적소리 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차주 및 차량 번호 등이 특정되어 그 차량에 행정지도 및 계도를 하여야 함.
 - 위 민원은 주차장 용도 및 사용에 관한 민원으로 보이며, 건축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 이송을 요청하는 바임.

○ 건축과

- 민원 상의 해당 대지는 건축물 관련 허가 된 내용이 없으며, 나대지의 상태임. 또한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 현장방문 사진을 확인하여 본 바 펜스가 쳐있기는 하나, 2m 이내의 펜스는 신고 사항이 아님으로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함. 따라서 가설시설물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
- 민원 자체를 확인하였을때는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으로 주차관련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으로 보임.

○ 주차관리과

- 민원 재지정으로 재확인하여 본바 이 지역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주차장법은 주차장시설(차구획 너비, 회전각도 등)에 관한 법으로 주차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가 없음.
- 참고로 작년 이 구역은 ‘짜투리 주차장 사업’ 대상이었으나, 서울시 및 은평구 등 모든 협의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가 아니라는 사유로 불가 답변을 받아 사업 실행을 못하였음.
- 토지 소유주는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 따라 면담 및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민원 답변은 지구단위계획 위반 관련 민원으로 공간계획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으로 보임.

○ 공간계획과

- 공간계획과의 업무 특성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계획수립을 하는 부서이며. 이에 따라 실행 및 단속등의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처리함.

- 이 지역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역이긴 하나 이 지역에 주차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규제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관련 부서의 확답 또는 검토 의뢰가 들어올 경우 검토 후 회신할 수 있음.
- 이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불만 사항을 중점으로 해결해야 함에 따라 주차장 사용관련 민원이므로 주차장이 아닌 곳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은 주차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 판단 및 결론

- 해당 민원은 주거용도 구역을 인근 상가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여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행정기관의 단속을 요청하고 있음.
-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이 경우는 단순히 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민원 사항이 아닌 해당 부지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단속하고 계도하여야 할 민원으로 보여짐. 따라서 처리 주무 부서 결정에 있어 부서 간 의견이 상이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민원으로 보여짐.
- 옴부즈만 회의 전 관련 부서(주차관리과, 공간계획과, 기후환경과, 건축과)담당팀장 및 담당들의 사전회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주차관리과와 공간계획과 두 부서로 의견이 좁혀진 사항은 동의함.

- 우선 해당 필지(00동 □□-□□)는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용도가 주거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5항에 의거 도시·군 계획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함.
-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 제54조 및 제133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그에 맞지 않을 경우 인·허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등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지구단위계획 시행 부서인 공간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두 번째로 주차관리과 소관의 주차장법 제2조(정의) 노외주차장의 정의를 보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해당 지역은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서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3조(감독)에서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할 경우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그와 연계로 법 제24조(영업정지 등)에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조항이 있음을 확인함.
- 위의 주차장법을 살펴보았을 때 민원의 해당 지역은 엄연한 노외주차장이며 이는 주차관리과에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두 부서(공간계획과, 주차관리과) 모두 관련법상 근거 조항이 있어 행정처분 권한이 있음에 따라, 어느 부서가 민원을 해결하여도 무방하나, 우선순위를 따져 볼 때 이미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용도로 정해진 부지임에 따라 공간계획과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제도 및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률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해당 임시 주차장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는 등 엄격히 단속할 경우 주변 지역의 무단주차와 그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련 부서들은 단속에 따라 발생 될 각종 문제 등을 미리 예상하여 협의를 통해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가 업주에게는 합법적인 주차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토지 소유주에게는 불법임을 계도하고 인지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처리결과

-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도 지역의 주차장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한 두 부서의 법령 해석 및 의견이 다름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두 부서 모두 관련법상 해당 조항이 있어 행정처분이 가능함. 다만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이미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용도로 정해진 부지임에 따라 공간계획과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제도 및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두 부서 모두 해당 법령에 따른 정확한 행정절차를 통한 처분을 할 것을 의견표명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스프링클러 설계용역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미공개에 관한 민원

□ 신청 원인

○ 해당 민원은 ▲▲▲▲과의 스프링클러 입찰공고 과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있음.

1. 세부평가기준 비공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 책임 문제
 - 공고 당시에는 평가항목과 배점만 제시되었고, 세부평가기준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민원인은 만점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PQ를 작성·제출했으나, 접수 이후 배부된 세부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해 본 결과 감점이 불가피한 항목이 있었으며,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PQ참여 자체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 그 결과 증명서 발급비, 서류 제본비, 인력 투입 등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2. 사후 세부평가기준 설정·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가능성
3. 서울시 차원의 지도·감독 필요성
4. 제도 개선 요청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과

- 세부평가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따라서 제4조

제1항의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음.

- 세부평가기준(배점표)은 공고 시 미첨부되었으나, PQ 접수 시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제공되어 형평성은 확보되었고, 조정·변경 사실은 없음.
- 낙찰자는 PQ 고득점자가 아니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로 자동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수 없음.
-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시간 소요는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관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사에서는 제4조의 절차(사전공개·의견수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석상 차이가 있으며, 본 건의 핵심 논점은 배점표 사전 미공개 여부임.

□ 판단 및 결론

- 당 민원은 ▲▲▲▲과 스프링클러계약 입찰과정에서 세부평가기준(PQ)을 사전공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발생 및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함.
- 해당 민원을 확인해 본 바 핵심쟁점사항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른 동법 제4조제1항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5일이상 국가등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의 해석의 차이로, 세부평가기준(안)의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짐.

- 우선 ▲▲▲▲과에서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별표1을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제4조제1항의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와 제4조의 조항을 살펴보면, 별표1 및 별표2를 그대로 적용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안)을 미리 공고하는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별표1과 별표2는 세부평가기준의 예시이며,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든 이를 변경하여 적용하든 관계 없이 세부평가기준을 정한 후 5일 이상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과의 스프링클러 설계용역 입찰과정에서 이 과정이 생략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과정의 생략으로 인해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보기 힘들며, 신청서 제출 시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배부되었다는 점에서는 해당 부서의 고의적 누락이 아닌 법률해석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로 보여짐.
- 따라서, 위 민원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 철저히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 것이며, ▲▲▲▲과에서는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의 해석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 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 ▲▲▲▲과 스프링클러계약 입찰과정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검토한 결과, 위 민원은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입찰 전체 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있었고 절차상 하자는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관련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고 철저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과에서는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의해석을 정확히 하고, 이에 기반하여 업무처리를 할 것을 의견포명함.